

2005. 6.

수 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안)의 재조정촉구 건의문 발의

위의 건의문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의원서명서 1부.

2.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안)의 재조정촉구 건의문. 1부.

발의자 : 김남원의원 (인)

외 3인

(찬성자 서명 별첨)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안)의 제조정촉구 건의문 발의서 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김숙원	김숙원	
이재현	이재현	
김성진	김성진	
이경국	이경국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안)의 제조정촉구 건의문

의안번호	1013
------	------

발의연월일 : 2005. 6.

발의자 : 김남원외 3인

1. 제안사유

지난 4월 25일 환경부에서 공고한 생태·자연도(안)의 내용이 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시행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하여 제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 고자 함.

2. 주요골자

- 충주호 상류지역의 등급지정을 철회할 것.
- 주민의 생존권 및 지역발전에 위협되지 않도록 등급을 조정하여 줄 것.

환경부의 생태·자연도(안)의 재조정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환경부장관님!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15만 제천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4월 25일 환경부에서 공고한 생태·자연도가 각종 개발행위시 사전검토대상이 되는 조건적 제약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위협하는 것이라 판단되기에 15만 제천시민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충주호 상류지역의 등급지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호 상류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수질개선등의 목적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등이 이미 적용되는 등 각종 규제가 강력히 적용되고 있어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가 되며,

또한 생태·자연도중 강원도 춘천의 “소양호”, 화천의 “파라호”, 전북 진안의 “용담호”, 경남 합천의 “합천호”등은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충주호에 대하여만 1등급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호수에 관한 생태·자연도 등급 규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므로 충주호 상류지역의 1등급지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의 생존권 및 지역발전에 위협되지 않도록 등급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자연도 2, 3등급으로 지정 예정된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농경지로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규제특례법, 관광진흥법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기 지정 또는 추진중인 지역으로 우리 제천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으로 인한 규제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과 월악산 국립공원 지정등 이미 2중·3중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지역발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위 지역이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위협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생태·자연도의 등급지정은 주민의 생존권 및 지역발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국토를 우리민족 후대에 물려줘야한다는 생태·자연
도의 제정배경에 대하여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였듯이 생태·자연도의 등급
지정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및 지역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제천시 15만 시민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생태·자연도
시행시 청풍명월의 고장이자 전국제일의 청정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는 제천시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등급지정을 조정하여 주실 것
을 강력히 견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5. 6. 24.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